

건설업 관리지침

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22일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. 이번 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종목 폐지 및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 기술자격취득자의 불이익 방지(통폐합된 직종에 대하여는 통합되기 전 국가기술자격자도 인정) 및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되는 점을 약용하여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회피를 방지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입니다. 이에 본지는 건설업 관리지침의 신·구조문 대비표와 전문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.

건설업 관리지침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유
<p>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</p> <p>4.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(1),(2). (생략)</p> <p>(3)위 (2)의 규정에 따라 3년간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건설업 등록관청은 해당업체의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(제2장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)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다서 신설> 이 경우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. 단, 가장 최근 결산일 이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·양수, 합병 또는 업종추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 (이하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(1),(2) (현행과 같음)</p> <p>(3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(다만, 주식회사의외부 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.)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설업을 양도·합병·상속(이하 '건설업 양도 등' 이라 한다)의 신고수리를 한 경우 주기적신고 기산일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주기적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, 양수인·합병후 존속법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 처</u></p>	<p>○진단대상 및주기적 신고시 진단의 기준일 기준 명확화 (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개정)</p> <p>○건설업 양도·합병·상속시 주기적 신고 기산일 명확화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5~9. (생략)</p> <p>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가~다 (생략)</p> <p>라. 주기적 신고 기산일 <u>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과 관계없이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업종등록일을 기준으로 주기적신고일을 산정함.</u></p> <p>마. 생략</p> <p>제7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</p> <p>1.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</p> <p>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(조문신설) 그 종류(영업정지 또는 과징금)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생략)</p> <p>나.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. 다만,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(1) 법 제83조제2호(건설업등록기준 미달)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</p> <p>(2). 생략</p>	<p><u>리할 경우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시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일 이후만 확인하다.</u></p> <p>6~10. (현행 5~9와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가~다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 및 수리방법</p> <p>(1) <u>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 또는 주기적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주기적 신고일을 산정(폐업기가 포함)하되, 재등록 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. 다만, 재등록시에 재무관리상태지다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으로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해당년도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.</u></p> <p>(2) <u>재등록 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재등록신청과 함께 주기적신고 기간(3년)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되, 건설업의 영위기간에 등록기준 미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신청 수리 후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재조치함.</u>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</p> <p>해당 업종별로----- -----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</p> <p>(1)----- 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-----.</p> <p>(2)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주기적 신고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신고 기산일을 폐업전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로 규정</p> <p>○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지구 추가</p> <p>○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지구 수정</p>